

**2007년도
정기 수 · 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정책본부
기업협력팀**

〈 요약 〉

□ 조사개요

- 조사대상기업 : 수·위탁거래기업 2,718개사
- 조사기간 : '07. 6월~11월(6개월간)
- 조사방법 : 인터넷 서면조사(1·2차) 및 현장조사(3차)

□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결제현황

- '07년 위탁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율은 92.8%로 '06년 대비 4.9%p 증가, '07년 60일초과 결제비율은 2.5%로 '06년 대비 3.7%p 감소하는 등 대금결제 환경이 점차 호전

□ 위탁기업의 법령준수 여부

- 납품대금위반비율은 '07년 14.2%로 '06년 대비 10.6%p 감소
- 약정서 미교부(9.9%) 및 기재사항 누락(12.8%) 등 약정서 관련 위반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 대기업은 물품 부당 수령거부·부당 단가인하 위반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물품수령증 교부 위반이 높았음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현장조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기업 199개사에 대하여는 지방중기청을 통해 시정조치(개선요구)

* 납품대금 등 미지급기업 : 158개사, 기타법령 위반기업 : 104개사

□ 향후 조치계획

- 불공정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하고, 시정요구에 불응 기업은 언론공표 및 공정위 통보
-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하고, 불공정사실이 없는 우수기업은 정책자금, 공공구매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약정서 확산 및 점검 강화 등 추진

목 차

I. 조사개요 1

II. 조사결과 분석 2

1.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결제현황 2
2. 위탁기업의 법령준수 여부 4
3. 납품거래 관련 애로사항 6

III.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 8

1.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8
2. 시정조치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9
3.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9
4. 부당 납품단가인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0

※ 붙임자료

1. 납품대금 결제 현황
2.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현황
3. 납품대금 이외 준수사항 위반현황
4. 납품거래 관련 애로사항(설문조사)
5. 수·위탁거래 법령 위반기업 명단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수·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현황 및 준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불공정행위 적발·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유도
-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정책 수립에 반영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1조~제27조, 제40조

2. 조사대상

- 대상기업 : 위탁기업 1,190개와 여기서 표본추출한 위탁기업 (500개)의 거래수탁기업 1,528개 등 총 **2,718개사**

* '06년 시정조치 미이행기업(25개, '06.5월 기준) 및 지방청에 신고된 2개사 포함

- 조사대상 거래기간 : '07.1.1 ~ 3.31, 3개월

3. 조사기간 및 방법 : '07. 6월 ~ 11월(6개월간)

- 1차('07.6~7) 및 2차('07.8~9) : 인터넷 서면조사
- 현장확인('07.10~11) : 지방청 및 본청 조사관 방문조사

4. 조사내용

- ① 납품대금 지급현황 : 결제수단,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등 대금지급 여부 등
- ② 법규 준수사항 : 약정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중단, 개발의뢰 후 발주기피 등 13개 항목
- ③ 납품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 등

II.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결제현황

① 납품대금 결제방법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위탁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율은 '07년 92.8%로 '06년 대비 4.9%p 증가

* 현금성결제 비중(%) : ('04) 82.6 → ('05) 93.8 → ('06) 87.9 → ('07) 92.8

- 특히, 세제혜택에 따른 어음대체결제 방식의 활용 확산에 따라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율이 매년 지속 감소

〈 위탁기업의 연도별 결제방법 비율(%) 〉

년도	현금성결제			어음	계
	현금,L/C	어음대체결제	계		
'04년도	39.0	43.6	82.6	17.4	100
'05년도	41.2	52.6	93.8	6.2	100
'06년도	40.8	47.1	87.9	12.1	100
'07년도	34.0	58.8	92.8	7.2	100

* '04~'06년 : 매출액 300억원 이상기업, '07년 : 매출액 100억원 이상기업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97.2%)이 중소기업(86.3%)에 비해 현금성결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아지고 어음결제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 현금성결제 비중(%) : 모기업(97.4) → 1차(87.8) → 2차(61.8)

* 어음결제 비중(%) : 모기업(2.6) → 1차(12.2) → 2차(38.2)

〈 기업규모별·거래단계별 결제방법 비율(%) 〉

구 분	현금성 결제			어음	계	
	현금,LC	어음대체결제	소계			
규모별	대기업	21.8	75.4	97.3	2.7	100
	중소기업	51.2	35.1	86.5	13.5	100
단계별	모기업	29.1	68.2	97.4	2.6	100
	1차협력	44.8	42.6	87.8	12.2	100
	2차이하 협력	59.9	1.8	61.8	38.2	100

② 납품대금 결제기간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위탁기업의 60일 초과 대금결제비율은 '07년 2.5%로 '06년에 비해 3.7%p 감소

- 최근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의 결제기간 단축에 기안하는 것으로 판단

* 60일초과 대금결제(%) : (04)10.7 → (05)20.4 → (06)6.2 → (07)2.5

* 60일초과 어음대체결제(%) : (04)13.2 → (05) 35.3 → (06) 9.5 → (07) 2.3

〈 위탁기업의 연도별 납품대금 결제기간별 추이(%) 〉

구분	60일 이내	60일 초과			
		61~90	91~120	120일 이상	계
'04년도	89.3	6.4	2.6	1.7	10.7
'05년도	79.6	11.9	8.2	0.3	20.4
'06년도	93.8	3.0	1.9	1.3	6.2
'07년도	97.5	2.2	0.2	0.1	2.5

- 다만 기업규모가 작고 납품단계가 낮을수록 60일을 초과한 대금결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 기업규모별 및 거래단계별 대금결제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금결제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

〈 기업규모 및 단계별 납품대금 결제기간별 추이(%) 〉

구분		결제기간			
		60일 이내	61~90일	91~120일	121이상
규모별	대기업	99.3	0.5	0.1	0.1
	중소기업	94.6	5	0.3	0.1
단계별	모기업	97.5	2.3	0.1	0.1
	1차협력	97.0	2.3	0.6	0.1
	2차이하 협력	99.2	0.7	0	0.1

2. 위탁기업의 법령 준수 여부

① 납품대금 관련 위반사항

* 납품대금 지급 관련 사항(상생법 제22조)

-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대금 60일 초과지급 시 지연이자 및 할인료를 별도 지급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관련 위반비율은 '07년 14.2%로 '06년에 비해 10.6%p 감소했고,

- 기업규모별 · 거래단계별로도 위반비율이 '06년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하락

〈 연도별 납품대금 관련 위반기업 비율(%) 〉

구 분	규모별		단계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모기업	1차협력	2차이하	
2006년	15.2	27.2	19.4	26.3	32.7	24.8
2007년	6.4	17.9	13.6	14.9	18.1	14.2

○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위반비율이 높고, 납품대금 ·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증가

- * 기업규모별 위반기업(%) : 대기업(6.42), 중소기업(17.93)
- * 납품단계별 위반기업(%) : 모기업(13.6) → 1차(14.9) → 2차(18.1)

- 다만, 대 · 중소기업간 보다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위반비율이 높아, 중소기업간 거래 공정성이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

〈 '07년 납품대금 관련 위반 현황 〉

구 분	조사대상	거래금액 (백만원)	미지급기업체수		미지급금액 금액(백만원)	
			기업수	비율(%)		
규모 별	대기업	358	49,311,276	23	6.4	633
	중소기업	753	28,523,013	135	17.9	2,184
단계 별	모기업	638	62,208,463	87	13.6	957
	1차협력	402	9,158,067	60	14.9	1,807
	2차이하	61	6,467,759	11	18.1	52
계		1,114	77,834,289	158	14.2	2,818

* 1차조사 대상(1,190개사) 중 수 · 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1,114개사 대상 조사

② 기타 법령 위반사항

* 위탁기업 준수사항(상생법 제21조, 제23~25조)

- 약정서 미교부, 약정서 기재사항 누락, 수령증 미교부, 부당 수령거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중단 등 13개 항목

○ 약정서 미교부(9.9%) 및 약정서 기재사항 누락(12.8%) 등 약정서관련 위반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남

- 약정서관련 위반비율이 높은 것은, 수탁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

* 기업규모·거래단계별 약정서 관련 위반비율

- 약정서 미교부(%) : 대기업(8.3), 중소(10.7) ; 모기업(10.1), 1차(9.9), 2차(8.8)
- 기재사항 누락(%) : 대기업(12.8), 중소(12.8) ; 모기업(12.5), 1차(13.2), 2차(12.6)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물품 부당 수령거부·부당 단가인하 위반비율이 높았고, 중소기업은 물품수령증 교부 관련 위반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 상위거래기업일수록 물품 부당 수령거부, 부당 단가인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위탁기업 법령 위반현황(수탁기업 1,287개사 응답기준, %) >

구분		약정서 미교부	약정서 기재누락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 수령거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중단
규모별	대기업(444)	8.3	12.8	3.3	3.8	2.9	0.9
	중소기업(843)	10.7	12.8	2.9	3.5	2.6	1.0
단계별	모기업(718)	10.1	12.5	3.7	4.1	3.0	0.5
	1차협력(490)	9.9	13.2	2.0	3.2	2.2	0.8
	2차이하(79)	8.8	12.6	2.5	1.2	2.5	6.3
전체		9.9	12.8	3.0	3.6	2.7	1.0

* 1차조사기업(1,190개사) 중 표본추출된 500개사에 납품하는 수탁기업 1,287개사 대상

* 13개 조사항목 중 위반비율이 미미한 항목은 생략

3. 납품거래 관련 애로사항

① 전반적 납품거래 관련

-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의 17.1%가 위탁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주요 내용으로 지속 단가인하(35.2%), 물량축소(29.9%), 결제 지연(22.7%), 제품불량 원인 전가(7.7%) 등의 순으로 지적

〈 납품관련 애로사항 비율(%) 〉

구분	지속 단가인하	물량축소	결제지연	불량 전가	불합리 검사기준	잡은 거래선변경	계
비율	35.2	29.9	22.7	7.7	2.9	1.5	100

② 부당 납품단가 인하 관련

-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수탁기업이 경험하는 위탁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유형으로는
 - 종전 단가기준 일률 인하(36%), 일방적 인하(32%), 위탁기업 경영상황 변동에 따른 인하(12%), 어음기한 단축(4%)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

〈 부당단가 인하의 유형(%) 〉

구분	종전단가 일률인하	위탁기업 일방적 인하	경제상황 변동	어음만기 단축	기타	계
비율	36	32	12	4	16	100

③ 물품 수령 부당거부 관련

- 위탁기업이 물품수령을 거부한 이유로 제품 불량(76.6%), 주문 불일치(32%) 등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많았으나

- 수령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발주후 제품/모델의 단종(12%), 발주자 취소(4%) 등에 의한 경우도 있었음

〈 물품수령거부 원인(복수응답 허용, %) 〉

구분	제품불량	주문 불일치	제품/모델 단종	원사업자 발주취소
비율	76.6	32	12	4

4] 소량발주/발주중단 관련

- 위탁기업이 소량발주하거나 발주 중단하는 사유로는
 - 위탁기업의 원사업자 발주취소(51.25%), 제품/모델 단종(37.5%) 위탁기업의 판매부진(25.3%) 등 위탁기업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

〈 소량발주/발주중단 원인(복수응답 허용, %) 〉

구분	원사업자 발주취소	제품/모델 단종	위탁기업 판매부진	위탁기업 약속위반
비율	51.25	37.5	25.0	3.75

5]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탁기업의 대응방식

- 행정기관(공정위, 중기청 등)에 신고(9.0%), 사법적 대응(5.2%)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비율은 저조한 반면,
-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한 일방적 감내(73.1%), 업종별 단체를 통한 의견표명(16.7%) 등 소극적 대응이 다수

〈 위탁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

구분	일방적인 감내	단체 의견표시	행정기관 신고	민사소송	계
비율	73.1	16.7	9.0	5.2	100

IV.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

1.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시정요구 중)

□ 현장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총 199개사에 대하여 지방중기청을 통해 12월말까지 시정을 요구*(‘07.11월 완료)

- 시정요구대상 : 납품대금 등 미지급기업 : 158개사
기타 법령 위반기업 : 104개사
- 각 지방청별 시정요구 조치에 대해 ‘08.2월중 해당기업의 시정결과를 점검할 계획

< 납품대금 위반기업(158개사) 유형별 위반내용(백만원, 개사) >

구분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4년	34	79.6	79	559.6	102	639.2
2005년	81	469.6	199	2,756.1	246	3,225.7
2006년	148	4,298.0	229	21,445.0	327	25,743
2007년	75	248.6	120	2,569.4	158	2,818

* 지연이자 미지급업체와 어음할인료 미지급업체의 중복을 제외

< 기타 법령 위반기업(104개사)의 유형별 위반내용 >

구분		약정서 미교부	약정서기재 사항 누락	수령증 미교부	불량물품 통보위반	내국신용장 미교부
규모별	대기업	9	14	4	0	0
	중소기업	55	34	7	7	1
단계별	모기업	34	26	8	5	0
	1차협력	24	21	3	1	1
	2차이하	6	1	0	1	0
계		64	48	11	7	1

2. 시정조치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불공정행위 적발로 시정조치가 통보된 199개사는 조치결과를 지속 점검하고, '08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재조사
- 시정조치기업은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1점~2.5점)을 부과하여 이를 별도 DB로 관리
 -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 등의 불이익 부여
 -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점) : 개선요구(1), 시정권고(1.5), 시정명령(2), 공표(2.5)
 - 지속적인 시정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언론공표 및 공정위 통보
 - * '07년 개선요구에 불응한 (주)우영에 대해 언론공표·공정위 통보('07.11)

3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금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하고, 불공정사실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
 - * 지방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1년간 거래내역, 협력기업 대상 불공정 사실 정밀조사 등을 거쳐 우수기업으로 지정 예정 : '08.1~2월중
 - *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요건
 - ① 연간 위탁거래 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20% 이상
 - ② 협력기업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현금성결제 포함)으로 결제
 - ③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우수기업 인센티브 내역('08년 사업부터 적용)
 - 2년간 수·위탁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 및 정부포상 시 우대
 - 공공구매시 가점 부여, 정부 R&D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민간 신용평가기관 평가 시 우대 등

4. 부당 납품단가 인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부당 납품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행위의 유형을 재조사하여 상생법 하위규정으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행위 지침 및 가이드라인 참고

- 동 가이드라인을 대·중소기업에 홍보하여 규제목적보다는 권고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율준수를 유도

□ 부당 단가인하 방지를 위한 표준약정서 활용 확산 유도

- '08년 실태조사부터 표준약정서 활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표준약정서를 민간에 전파

□ 자율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합리적인 단가 결정 분위기 조성